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9)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자: 이군수 의원 등 18명
- 의안번호: 제5185호

2. 제안이유

- 성남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규정(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6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 제49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6. 20. ~ 06. 26.):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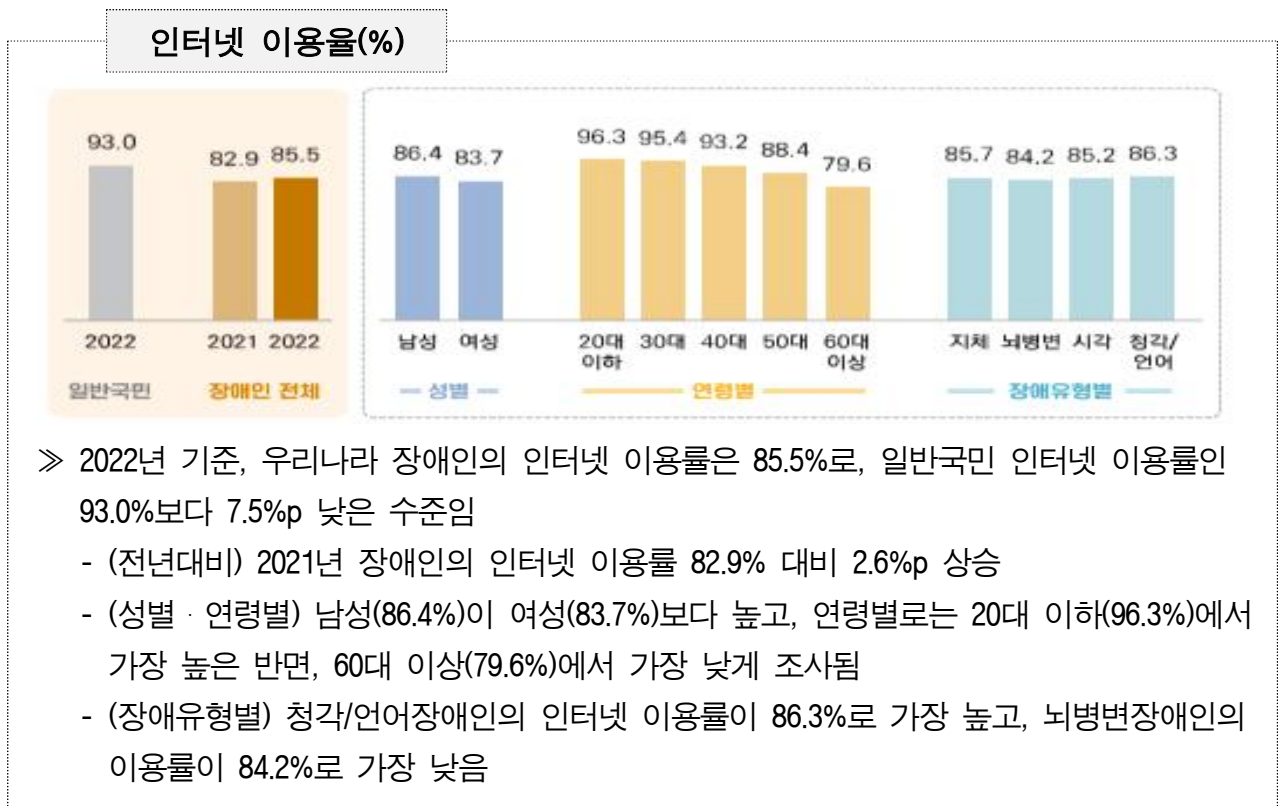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5. 집행기관 의견: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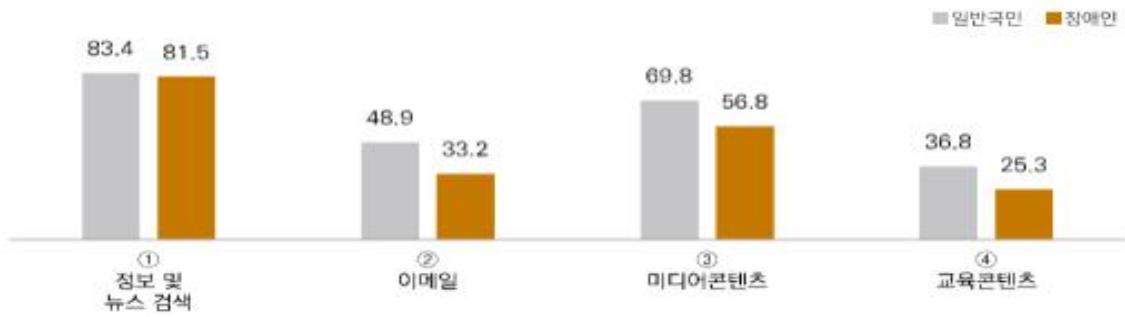
6.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

- 디지털 확대 및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중심의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변화 속도에 맞추어 적응하기 쉽지 않음. 특히,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정보 역량 수준이 낮아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이에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정보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항목별 이용률(%)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85.3%로 일반국민 91.4%보다 6.1%p 낮게 나타남.

- 장애인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①정보 및 뉴스 검색(81.5%) ③미디어콘텐츠 (56.8%) ②이메일(33.2%) ④교육콘텐츠(25.3%) 순으로 나타남.

나.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¹⁾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²⁾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³⁾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2)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추진사업의 내용과 사무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정안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적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같은 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며,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표를 살펴보면,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함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무선 통신기기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종합수치는 매년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⁴⁾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85.5%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93.0% 보다 무려 7.5% 낮은 수준임.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 장애인 가구의 이용 가능한 PC 보유율은 61.2%로 일반국민 72.4% 보다 11.2% 낮고,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 86.2%로 일반국민 98.3% 보다 12.4% 낮은 수준임.
- ▶ 인터넷 이용률은 85.5%로 일반국민 93.0% 보다 7.5% 낮고, SNS·메신저·개인 블로그 등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87.4%로 일반국민 91.8% 보다 4.4% 낮은 수준임.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이를 단순히 인터넷 이용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점자가 없고 눈높이도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Kiosk)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사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가 35,979명(2023. 5. 31.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보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 향후 정보 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된다 할 것임.

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조사대상: 2022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 (지체·뇌병변·청각/언어·시각장애유형 기준) 만 7~69세 등록장애인 2,200명

- 아울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 입법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3개구(강서, 금천,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음.

참고

성남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3년 5월 기준)

○ 구별 등록장애인

(단위: 명)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5,979	11,178	10,795	14,006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계	남자	여자	구분	계	남자	여자
계	35,979	20,933	15,046	정신	1,405	695	710
지체	14,799	8,533	6,266	신장	1,681	984	697
시각	3,505	2,143	1,362	심장	115	73	42
청각	6,058	3,259	2,799	호흡기	202	138	64
언어	327	235	92	간	260	173	87
지적	2,919	1,764	1,155	안면	36	24	12
뇌병변	3,549	2,043	1,506	장루·요루	267	159	108
자폐성	780	670	110	뇌전증	76	40	36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구분	계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고
계	35,979	13,562	22,417	
수정구	11,178	3,919	7,259	
중원구	10,795	3,986	6,809	
분당구	14,006	5,657	8,349	

관계 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